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내·외 도시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2. 2. 14.

행정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2022년 1월 24일

나. 제 출 자: 영등포구청장

다. 회부일자: 2022년 2월 4일

라. 상정일자: 제235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행정위원회 제5차 회의(2022. 2. 11.) 상정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미래비전추진단장 이영은)

가. 제안이유

- 국·내외 도시와의 협력관계를 ‘자매’와 같이 통상적 혈연관계로 표현하는 것은 가족에 대한 개념과 인식이 변하고 높은 성인지 감수성을 요구하는 시대적 흐름에 맞지 않으며, 특정성별을 법률용어로 사용하는 것은 성차별적 우열관계를 나타내는

뜻으로 잘못 해석될 여지가 있어, 상호 대등한 관계를 전제로 하는 객관적·중립적 용어로 규정하고자 제명을 개정하고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자매결연’을 ‘친선결연’으로 개정 (제명, 안 제1조~제8조, 제10조~제11조)
- ‘자매도시’를 ‘친선도시’로 개정 (안 제9조, 제11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김옥연)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 성별에 대한 고정관념을 불리일으킬 수 있고 우열적 관계를 나타내는 “자매” 용어를 상호 대등한 관계를 의미하는 객관적 이고 중립적인 “친선” 용어로 변경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 안 제명을 포함하여 안 제1조~제8조, 제10조~제11조에서 “자매결연”을 “친선결연”으로 변경하고,
- 안 제9조, 제11조에서 “자매도시”를 “친선도시”로 변경하였음.

○ 검토 결과

-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상호 우열적 관계를 지칭하는 차별적인 용어인 “자매”를 성인지 감수성을 요구하는 시대적 흐름에 맞춰 국제적으로도 통용되는 용어인 “친선”으로 변경한 것으로서 타당한 조례안이라고 사료됨.

4. 심사결과: 원안 가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내·외 도시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 451 호
----------	---------

제출연월일: 2022. 1. .

제 출 자: 영등포구청장

1. 제안이유

- 가. 국·내외 도시와의 협력관계를 ‘자매’와 같이 통상적 혈연관계로 표현하는 것은 가족에 대한 개념과 인식이 변하고 높은 성인지 감수성을 요구하는 시대적 흐름에 맞지 않으며
- 나. 특정성별을 법률용어로 사용하는 것은 성차별적 우열관계를 나타내는 뜻으로 잘못 해석될 여지가 있어, 상호 대등한 관계를 전제로 하는 객관적·중립적 용어로 규정하고자 제명을 개정하고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자매결연’을 ‘친선결연’으로 개정(제명, 안 제1,2,3,4,5,6,7,8,10,11조)
- 나. ‘자매도시’를 ‘친선도시’로 개정(안 제9,11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 나. 예산조치: 해당 없음
- 다. 협의사항
 - 1) 규제심사: 신설·강화되는 규제사무 없음
 - 2) 부패영향평가·성별영향분석평가·인권영향평가: 해당 없음
- 라. 입법예고(2021. 11. 18. ~ 12. 8. / 20일간) 결과: 의견 없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내·외 도시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내·외 도시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내·외 도시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내·외 도시간 친선결연 등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자매결연”을 “친선결연”으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자매결연”이란”을 ““친선결연”이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자매결연”을 “친선결연”으로 한다.

제3조 중 “자매결연”을 “친선결연”으로 한다.

제4조의 제목 “(자매결연 등 대상)”을 “(친선결연 등 대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자매결연”을 “친선결연”으로 한다.

제5조의 제목 “(자매결연 등의 제외)”를 “(친선결연 등의 제외)”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중 “자매결연”을 각각 “친선결연”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자매결연”을 “친선결연”으로 한다.

제7조 중 “자매결연”을 “친선결연”으로 한다.

제8조의 제목 “(자매결연 등 체결)”을 “(친선결연 등 체결)”로 하고, 같은 조 제1

항부터 제3항까지 중 “**자매결연**”을 각각 “**친선결연**”으로 한다.

제9조제1항 및 제2항 중 “**자매도시**”를 각각 “**친선도시**”로 한다.

제10조제1항 및 제2항 중 “**자매결연**”을 각각 “**친선결연**”으로 한다.

제11조의 제목 “(**자매결연 파기**)”를 “(**친선결연 파기**)”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자매도시**”를 “**친선도시**”로, “**자매결연이**”를 “**친선결연이**”로, “**자매결연**
을”을 “**친선결연을**”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체결된 국내·외 도시와의 자매결연 등은 이 조례에 따라 체결된 것으로 본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u>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내·외 도시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u>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와 국내·외 자치단체 또는 도시간의 교류사업의 내실화를 도모하고 <u>자매결연</u> 및 우호협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u>자매결연</u>”이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와 국내·외 자치단체 또는 도시(이하“국내·외 도시”라 한다)간 상호 공동 관심사에 대한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행정, 경제, 문화, 교육 등 각 분야에서의 친선과 공동 발전을 도모해 나가기 위한 협약 체결을 말한다. 2. “우호협력”이란 <u>자매결연</u>에 앞서 사전교류를 통한 상호협력 가능성을 도모해 나가기 위한 협약 체결을 말한다.	<u>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내·외 도시간 친선결연 등에 관한 조례</u> 제1조(목적) ----- ----- ----- <u>친선결연</u> ----- ----- -----. 제2조(정의) ----- -----. 1. “<u>친선결연</u>”이란 ----- ----- ----- ----- ----- ----- -----. 2. ----- <u>친선결연</u>----- ----- ----- -----.

제3조(적용범위) 국내·외 도시와
의 자매결연 등 업무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
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자매결연 등 대상) 자매결
연 및 우호협력 대상도시는 지
속적인 교류가 가능하고 지역
여건 등이 대등한 국내·외 도
시로 선정한다.

제5조(자매결연 등의 제의) ① 서
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국내·외
도시로부터 자매결연 등의 제의
를 받는 경우에는 해당 국내·
외 도시의 자료를 송부 받아 다
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 6. (생략)

② 국내·외 도시에 자매결연
등의 제의를 하는 경우에도 제1
항과 같다.

제6조(사전교류) ① 구청장은 국
내·외 도시와 자매결연 등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상대 국
내·외 도시와의 충분한 협의를
통하여 상호 교류여건을 조성한

제3조(적용범위) -----
-- 친선결연 -----

-----.

제4조(친선결연 등 대상) 친선결
연 -----

-----.

제5조(친선결연 등의 제의) ① --

----- 친선결연 -----

-----.

1. ~ 6. (현행과 같음)

② ----- 친선결연 -

-----.

제6조(사전교류) ① -----
----- 친선결연 -----

다.

② (생략)

제7조(의회동의) 구청장은 국내·외 자치단체 또는 도시와 자매결연을 체결 또는 파기하고자 할 때에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8조(자매결연 등 체결) ① 자매결연 및 우호협력은 구청장과 국내·외 도시의 장이 참석하여 결연식을 가지고 서명함을 원칙으로 하되, 사정에 따라서 서면으로 체결하고 추후 결연식을 가질 수 있다.

② 자매결연이나 우호협력을 체결할 때에는 공동의 관심사항, 교류계획 등 기본사항에 합의 서명하고, 합의문을 2부 작성하여 각각 보관한다.

③ 자매결연 체결 및 상호 방문에 따른 경비의 부담은 상호 호혜주의에 입각하여 구청장과 국내·외 도시의 장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9조(교류사업의 지원) ① 구청장은 다양한 분야의 주민이 국내·외 자매도시와의 교류사업

--.

② (현행과 같음)

제7조(의회동의) -----
----- 친선
결연-----

-----.

제8조(친선결연 등 체결) ① 친선결연 -----

-----.

② 친선결연-----

-----.

③ 친선결연 -----

-----.

제9조(교류사업의 지원) ① ----

---- 친선도시-----

에 균형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한다.

② 구청장은 관내 각급 기관, 사회단체, 기업 등의 국내·외 자매도시와의 교류 활성화를 위하여 가능한 범위에서 예산의 지원 및 시설의 사용, 교통편의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제10조(사후관리) ① 구청장은 자매결연이나 우호협력 체결 후 교류부진 또는 교류단절이 되지 않도록 각 분야에서의 교류 사업을 지속적으로 유지·관리한다.

② 구청장은 자매결연 체결과 관련된 기록물 및 관련 서류를 10년 이상 보존하고, 협약서·공동선언문 등 주요문서는 영구 보존 하여야 한다.

제11조(자매결연 파기) 구청장은 국내·외 자매도시와의 교류 상 해소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거나 교류단절로 자매결연이 유명무실해진 경우 또는 지속적인 교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자매결연을 파기할 수 있다.

-----.

② ----- 친선도시-----

-----.

제10조(사후관리) ① ----- 친선결연-----

--.

② ----- 친선결연 -----

-----.

제11조(친선결연 파기) -----
----- 친선도시-----

----- 친선결연이 --

---- 친선결연을 -----
--.